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성 희 의원)

의 안 변 호	22-11
------------	-------

발의년월일: 2022. 1.

발의자: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김진천, 이민석, 최은하, 채우진

1. 개정이유

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좀 더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2. 1. 13. ~ 1. 18.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제9조(중전의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 및”을 각각 “위원과 자문위원 및”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 중 “위원 중”을 “위원과 자문위원 중”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2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u></p> <p><u>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자문에 응하며, 표결은 할 수 없다.</u></p> <p><u>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10년 이상 여객운수 업체 또는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u></p> <p><u>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u></p>
<p><u>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u></p>	<p><u>제9조(비밀준수) ① ----- 위원과 자문위원 및 -----</u> -----.</p> <p><u>② ----- 위원과 자문위원 및 -----</u> -----.</p>
<p><u>제9조 · 제10조 (생 략)</u></p>	<p><u>제10조 · 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u></p>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 (생략)

제12조(수당) ----- 위
원과 자문위원 중 -----

-----.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자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석지민
연 락 처	02-3153-9685